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2025. 11. 21.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경과

의안 제652호로 2025년 11월 7일 이순우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 명: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나.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다.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 라.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4조)
- 마. 공유재산 우선임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바.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한 회원의 표창 규정(안 제6조)
- 사. 사회복지협의회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2025. 11. 7.~2025. 11. 13.)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제정 배경 및 취지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영등포구 사회복지 협의회는 2006년 2월 16일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음.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설립현황

- 법인구성일: 2006. 2. 16.
- 법인회원수: 71명(개인회원 39명, 단체회원 32개소)

주요 업무

- 공공과 민간부분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가교역할
- 민간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간의 협의·조정 네트워크
- 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계·협력
- 민간복지사업 수행기관으로서의 직접 서비스 기능
- 사랑나눔 푸드뱅크·마켓 1~3호점 위탁 운영
- 좋은이웃들, 케어뱅크 사업 보건복지부 위탁 운영

연도별 지원 예산

(단위: 천원)

구 분	계	협의회	푸드뱅크·마켓
2025	682,686	277,744	404,942
2024	625,462	253,827	371,635

예산 지원내용

-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운영비(구비 100%)
- 푸드뱅크·마켓: 인건비(3인), 운영비, 시설비(시·구비 각 50%)
인건비(3인), 운영비(구비 100%)

- 한편, 서울시를 비롯한 4개의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하였음.

서울시 및 타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단체	제 명
1	서울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2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3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4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5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이에 본 조례안은 민간주도의 사회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민관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구청장의 책무)는 구청장이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 사회복지 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3조(지원사업)는 협의회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업무와 더불어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간 연계·협력 체계 구축, 그 밖의 복지증진 사업 등을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4조(예산지원)는 안 제3조에 따른 지원 사업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5조(공유재산의 우선임대)는 「사회복지사업법」¹⁾제42조의2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 관련 시설의 설치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유·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반영한 것임.
- 다만, 본 조례안에서는 “사회복지사업 추진”이라는 표현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시설 설치”와 “사회복지사업의 육성”을 포괄적으로 축약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표창)는 협의회 회원 중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공로가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활동에 대한 동기부여와 사회적 인식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 안 제7조(지도·감독)는 구청장이 협의회의 업무에 대해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회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경비를 구 예산의

1) 제42조의2(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유·공유 재산을 우선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 또한, 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협의회의 고유 업무뿐만 아니라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민관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이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 자료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 ②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중앙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관하여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제7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 ④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업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2.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5.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6.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7.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8.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9. 시·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도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0.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1.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17조(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2조의2(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유·공유 재산을 우선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